

(이하 “갑”라 한다) 와 (주)케이지이니시스(이하 “을” 라 한다)는 “을”이 제공하는 “자동결제 서비스”(이하 “서비스”라 한다)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약(이하 “본 특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“갑”이 운영하는 인터넷 상점에 “이용자”가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“갑”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적 과금을 자동으로 결제하는데 필요한 “서비스”를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양자간의 법률관계를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자동결제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 함): “이용자”가 회원제 서비스 등에 있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약정 금액을 “갑”에게 결제하여야 하는 경우, “을”이 초기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관련 이용자 정보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와 “이용자” 본인 확인을 거친 후 “이용자”를 인식할 수 있는 고유번호(빌키)를 “갑”에게 제공하고, “갑”이 이 빌키를 이용하여 해당 결제를 요청할 시 이를 지원하는 “을”의 서비스
- ② 이용자: “갑”이 요청한 자동결제 약관에 사전동의 하고, “서비스”를 통해 빌키 생성에 동의한 자로서 결제수단의 적법한 명의인
- ③ 빌키: “서비스”를 통해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제공하는 “이용자” 인식 번호로, “갑”은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신용 카드사에 일정 금액의 결제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
- ④ 자동결제 수수료: “을”의 “서비스”에 대한 대가로 “갑”이 지불하는 약 정 수수료, 단, 지불수단 수수료는 “INipay 이용계약서” 에 준한다
- ⑤ 인증수수료: 신용카드 및 핸드폰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“갑”이 “을”에게 지불하는 대가
- ⑥ 대표가맹 Case: 신용카드 결제거래에 있어 “갑”이 “을”의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대여하여 이용하는 경우
- ⑦ 자체가맹 Case: 신용카드 결제거래에 있어 “갑”이 자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이용하는 경우

제 3 조 (정산시기 및 방법)

- ① “을”은 자동결제 수수료에 대하여 결제대금에서 선 공제한 후 “INipay 이용계약서”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맞춰 “갑”에게 현금 지급키로 한다.
- ② “을”은 “인증 수수료” 관련하여 해당 월 수수료 총액을 익월 10 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“갑”에게 청구하고, “갑”은 세금계산서 수령 후 15 영업일까지 해당 월 수수료 총액을 “을”에게 현금입금키로 한다.
- ③ “을”의 청구금액과 “갑”의 대사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“갑”은 “을”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선 지급하고, 양 사간 대사 후 과오납에 대해 정정키로 한다.

제 4 조 (계약조건)

본 계약의 수수료 및 이용의 범위는 [부칙]에 따른다.

제 5 조 (기타)

- ① “갑”은 “이용자”에 대하여 본 “서비스” 제공 전 반드시 회원가입 약 관과는 별도로 자동결제 약관을 고지하여야 하며, 이 약관에 대한 “이용자”의 동의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.
- ② “갑”은 “을”이 웹상에서 “갑”이 빌키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“이용자”의 월 자동결제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다.
- ③ 본 “서비스”는 “이용자”가 제출한 이용자 정보가 이동통신사나 카드사 DB 에 있는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여 이것이 일치할 경우

“이용자”의 고유번호 40 자리(빌키)를 “을”이 “갑”에 게 제공하는 것일 뿐 “이용자”가 해당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의 적법한 권리자임을 “을”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, 또한 빌키가 정당한 권원이 있는 “이용자”임을 “을”이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양사 의견을 같이한다.

- ④ “갑”은 “이용자”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권에 기한 결제 청구만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이에 반하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(취소/환불, 철회 등)에 대한 모든 책임은 “갑”이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.
- ⑤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체결된 “INipay 이용계약서” 내용을 준용하고, “INipay 이용계약서”와 본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하며, “INipay 이용계약서” 종료 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.
- 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 조의 16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 24 조의 14 에 따라 “갑”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항의 의무와 관련한 “이용자”의 민원, 손해배상 청구 등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1. “갑”은 “이용자”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 일 전까지 “이용자”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(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휴대폰 메시지, 메신저, 팩스,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수단)으로 미리 고지한다. 다만,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“이용자”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다.
 - 가. 거래내용
 - 나.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
 - 다.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
 - 라. 환불 등의 거래조건
 - 마. 거래조건을 “이용자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·해지 사유
 2. “갑”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“이용자”가 정기결제 철회, 취소, 청약철회, 계약의 해제·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.
 - 가. 인터넷 사이트
 - 나. 모바일 앱
 - 다. 전화, 휴대폰 메시지,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센터
 - 라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
 3. “갑”은 정기결제 철회, 취소, 계약의 해제·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,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·캐시·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“이용자”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.
 - 가. 관련 법령 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(이하 “표준약관”)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: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. 다만,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.
 - 나. 가목 외의 경우: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

20 年 월 일

(갑 : 이용자)

법인/개인사업자 (기재 또는 법인명판)

상 호 명 :

주 소 :

대표(이사) : (법인/개인인감)

※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

(을 : 제공자)

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

(04517)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 타워

14, 15 층 (주)케이지이니시스

대표이사 이 선 재 (인)

부 칙

1. 수수료(부가세별도) 및 이용여부

가. 본 계약과 관련하여 "갑"이 "을"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 및 인증용 이용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.

자동결제 종류	자동결제 수수료		인증 수수료	이용여부
핸드폰 자동결제	실 물	%	건당 원	<input type="checkbox"/>
	컨텐츠	%		
신용카드 자동결제 (대표가맹 Case)	자동결제 수수료		무료	<input type="checkbox"/>
	%			
	우대 수수료 (영세 중소기업자) 영세 ____% 중소기업 1 ____% 중소기업 2 ____% 중소기업 3 ____%			
신용카드 자동결제 (자체가맹 Case)	%		무료	<input type="checkbox"/>

나.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수수료 기입 후, 이용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
* 사업자번호:

* MID: